

제 2 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류	산 동물
01.01-01.06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되어야 한다.
제2류	육과 식용설육
02.01-02.10	사용된 제1류 및 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03.01-03.07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04.10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1-05.11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6류	산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06.01-06.04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7.01-07.14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8류	식용의 과일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08.14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9류	커피·차·마테 및 향신료
09.01-09.10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10류	곡물
10.01-10.08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1.01-11.09	사용된 제7류·8류 및 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12.14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13류	락·검·수지 및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1-13.02	사용된 제1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1-14.04	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01-15.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5.01호부터 제 15.0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5.07-1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5.07호부터 제 15.2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

	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4.11-16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604.11호부터 제 160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604.30-16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604.30호부터 제 1605.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18.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8.01호부터 제 18.0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8.03-1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8.03호부터 제 18.0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2.11-19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902.11호부터 제 1905.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10-20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001.10호부터 제 2003.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3.20-20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003.20호부터 제 2003.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4.10-200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004.10호부터 제 2005.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5.90-2006.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005.90호부터 제 2006.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10-200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007.10호부터 제 2008.1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00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8.20-20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008.20호부터 제 2009.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11-21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101.11호부터 제 2106.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2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22.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2.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2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3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3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2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7.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0.11-271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710.11부터 제 2710.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71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8.01-28.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01호부터 제 28.0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04.21-280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04.21호부터 제 2804.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04.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04.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04.69-28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04.69호부터 제 280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05.19-28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05.19호부터 제 2805.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0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09.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1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1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15.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1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2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2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23.00-282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23.00호부터 제 2824.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2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2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27.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27.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27.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27.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2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3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3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3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36.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36.99-283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36.99호부터 제 2837.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4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8.4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9류	유기화학품
2902.11-2902.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2.11호부터 제 2902.4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43-2902.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2.43호부터 제 2902.4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60-2902.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2.60호부터 제 2902.7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12-2903.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3.12호부터 제 2903.1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3.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21-2903.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3.21호부터 제 2903.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47-2903.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3.47호부터 제 2903.4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59-2903.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3.59호부터 제 2903.6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69-29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3.69호부터 제 290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12-290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5.12호부터 제 2905.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31-2905.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5.31호부터 제 2905.4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49-2905.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5.49호부터 제 2905.5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6.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6.19-290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6.19호부터 제 2907.1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7.15-29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7.15호부터 제 2908.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9.19-2909.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9.19호부터 제 2909.4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0.10-291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10.10호부터 제 2912.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2.60-291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12.60호부터 제 2914.19호까지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4.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14.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4.39-2914.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14.39호부터 제 2914.5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4.70-2915.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14.70호부터 제 2915.2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5.29-2915.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15.29호부터 제 2915.3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5.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15.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6.11-2917.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16.11호부터 제 2917.3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7.34-2917.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17.34호부터 제 2917.3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8.15-291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18.15호부터 제 2918.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8.90-291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18.90호부터 제 2919.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2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1.12-2921.4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21.12호부터 제 2921.4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1.51-292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21.51호부터 제 2922.1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2.19-292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22.19호부터 제 2922.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2.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22.4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2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2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2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5.19-292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25.19호부터 제 2926.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7.00-293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27.00호부터 제 2930.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30.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1.00-293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31.00호부터 제 2932.1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3.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33.6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3.7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33.7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4.20-293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34.20호부터 제 2934.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4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피티와 그 밖의 매스틱 및 잉크
3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2.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2.90-32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202.90호부터 제 3203.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204.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4.12-3204.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204.12호부터 제 3204.1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4.17-32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204.17호부터 제 320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5.00-3206.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205.00호부터 제 3206.4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6.50-3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206.50호부터 제 320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2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11-3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2.11호부터 제 32.1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13.90-32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213.90호부터 제 321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10-39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901.10호부터 제 3901.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901.30-39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901.30호부터 제 390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902.10-3904.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902.10호부터 제 3904.2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90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90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904.50-390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904.50호부터 제 3905.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9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90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9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9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906.90-390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906.90호부터 제 3907.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907.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907.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907.50-39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907.50호부터 제 3907.9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907.99-39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907.99호부터 제 390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909.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909.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9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391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400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02.20-4002.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4002.20호부터 제 4002.7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02.91-400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4002.91호부터 제 4002.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41.04-41.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41.04호부터 제 41.1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2류	가죽제품 · 마구 · 여행용구 ·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42.01-4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42.01호부터 제 42.0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4.01-4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44.01호부터 제 44.0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0류-제60류	섬유 제품
50.01-6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0.01호부터 제 60.0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61류-제63류	의류 제품
61.01-63.10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
제64류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64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64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402.12-64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6402.12호부터 제 6402.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402.30-64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6402.30호부터 제 6403.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403.30-640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6403.30호부터 제 6404.1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4.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64.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4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6406.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68류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68.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0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0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71.13-71.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1.13호부터 제 71.1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2류	철강
72.01-72.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2.01호부터 제 72.07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08.25-7208.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208.25호부터 제 7208.3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08.51-7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208.51호부터 제 720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09.16-7209.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209.16호부터 제 7209.1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09.26-721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209.26호부터 제 7210.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10.49-721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210.49호부터 제 7211.1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11.19-72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211.19호부터 제 7229.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3류	철강의 제품
7304.39-7304.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04.39호부터 제 7304.4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05.11-7305.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05.11호부터 제 7305.1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05.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05.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06.40-7306.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06.40호부터 제 7306.5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06.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0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07.21-7307.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07.21호부터 제 7307.2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07.91-7307.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07.91호부터 제 7307.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08.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0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08.90-7309.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08.90호부터 제 7309.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18.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18.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18.23-7318.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18.23호부터 제 7318.2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2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2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25.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25.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26.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26.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26.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32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74류	동과 그 제품
740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0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07.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07.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407.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07.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408.11-740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4.07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

	7408.11호부터 제7408.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08.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0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408.22-7408.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08.22호부터 제 7408.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4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0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0.11-741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4.0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 7410.11호부터 제7410.1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0.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10.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410.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4.0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 7410.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1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411.21-7411.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11.21호부터 제 7411.2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4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1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41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1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75.01-7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5.01호부터 제 75.0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7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6.01호부터 제 76.0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1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61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6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6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6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61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61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616.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78류	연과 그 제품
78.01-7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8.01호부터 제 78.0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79.01-79.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9.01호부터 제 79.0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1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101.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101.9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104.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104.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107.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1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1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1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1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11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3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3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30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30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84류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07.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07.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07.32-8407.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07.32호부터 제 8407.34호까지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08.20-84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08.20호부터 제 840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0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0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13.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1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1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1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1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15.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1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21.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21.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인 것
8421.31-8421.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21.31호부터 제 8421.3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8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8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82.20-848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82.20호부터 제 8482.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이고, 사용된 베어링 레이스(링)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에 한한다.
848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82.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8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이고, 사용된 베어링 레이스(링)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에 한한다.
8483.10-8483.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83.10호부터 제 8483.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8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8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5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01.31-8501.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501.31호부터 제 8501.3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07.10-85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507.10호부터 제 8507.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11.10-8511.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511.10호부터 제 8511.5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5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1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51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12.40-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512.40호부터 제 851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16.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516.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1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518.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52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2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528.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4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54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20-87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701.20호부터 제 870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7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7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705.10-8708.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705.10호부터 제 8708.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708.92-87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708.92호부터 제 8709.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7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71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7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71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711.50-87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711.50호부터 제 871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71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71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714.91-8714.9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714.91호부터 제 8714.9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7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90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1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901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9029.10-902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9029.10호부터 제 9029.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94류	가구와 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 서포트,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와 램프,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 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9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94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94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94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9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5.91-94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9405.91호부터 제 9406.00호까지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6류	잡품
9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96.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3.10-9603.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9603.10호부터 제 9603.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9603.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부속서 3-나 영역원칙의 예외

1. 상품목록

가.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첨부되고 부록 3-나-1에 기재된 상품에 제3.14조를 적용한다.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가호에 언급된 목록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국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채택된다.

2.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하여 재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3.6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제1항가호에 규정되고 이후 개정된 목록상의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1) 비원산지 투입량의 총 가치⁷⁾가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된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2) 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재반입된 재료나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관련 조항은 제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3. 제3.14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 제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제4장(원산지 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⁸⁾에 의하여 발급된다.

7) “비원산지 투입량의 총 가치”란 수송비를 포함한 해당 당사국의 역외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은 물론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8)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은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을 말한다.

-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에 그 상품은 제3.14조가 적용됨을 표시한다.
- 다.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4장(원산지 절차)의 관련 조항은 제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 라. 각 당사국은 제4.11조(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 제4.12조(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 제4.13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검증), 제4.15조(비밀유지) 및 제4.18조(통일규칙)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지원한다.

4.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자국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를 발생시킬 정도의 물량 증가와 그러한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산업에 그러한 피해 또는 피해 야기의 위협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기간 동안 제3.14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중지한다.
- 나. 가호에 따라 제3.14조의 적용을 중지하려는 당사국은 그러한 중지 기간이 시작되기 2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안된 중지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다. 가호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중지 조치를 취한 당사국이 피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 라. 지연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가호에 따른 제3.14조 적용의 중지는 다른 쪽 당사국에 2개월 전 사전 통보 없이도 잠정적으로 취하여질 수 있다. 다만, 통지가 그러한 중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가호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해당 당사국은 제3.14조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1)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 2) 사전 협의 의무가 없다.
- 3) 중지 기간 또는 빈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5. 검토

가. 양 당사국은 제15.2조(공동위원회와 검토)제2항다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입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제3.14조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상,

- 1)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에 대하여 제1항가호에 규정된 첨부 목록상 기재된 각 상품의 지난 6개월간의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3.14조의 운영에 대한 간략한 사실 보고서를 수입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 2) 수입 당사국은 수출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락하지 아니한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사유를 포함한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거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한다.

나. 수입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는 제3.14조의 이행 및 운영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추가 정보를 수출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다.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양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6. 철회권

이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5년 후에, 각 당사국은 제3.14조의 적용 결과로 자국의 이해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검토에 기초하고 그 재량에 따라 이 부속서의 적용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7. 이 부속서의 해석·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제14장(분쟁해결)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8. 이 부속서의 어떠한 것도 제2장(상품무역)의 제2-2절(긴급수입제한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록 3-나-1
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표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892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30400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480439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962, 550969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81099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120, 610130, 610190, 610210, 610220, 610230, 610290, 610322, 610323, 610329, 610331, 610332, 610333, 610339,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13, 610419, 610422, 610423, 610429, 610431, 610439, 610441, 610449, 610451, 610459, 610461, 610469, 610590, 610712, 610719, 610721, 610722, 610729, 610791, 610811, 610829, 610832, 611019, 611211, 611212, 611219, 611220, 611231, 611239, 611241, 611249, 611420, 611490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620111, 620112, 620113, 620119, 620192, 620219, 620291, 620292, 620299, 620312, 620322, 620323, 620329, 620339, 620349, 620412,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41, 620444, 620590, 620610, 620620, 620721, 620722, 620791, 620799, 620811, 620819, 620821, 620822, 620829, 620891, 620899, 620920, 620930, 620990, 621040, 621120, 621132, 621139, 621141, 621142, 621230, 621390, 621420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 제품 및 닐마
630130	

제 4 장 원산지 절차

제 4.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당국이란 관세법과 규정의 운영과 적용을 위하여 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책임이 있는 당국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말한다.

동일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이 없는 외관상의 미세한 차이에 상관없이, 물리적 특성 및 품질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말한다.

간접재료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간접재료”를 말한다.

재료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자”를 말한다.

생산이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을 말한다.

제 4.2 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